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1나633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1나63310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7 선고 2020가단32955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아

피고, 항소인 1. B

2. 주식회사 C

변론종결 2022. 7. 8.

판결선고 2022. 8. 26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9. 7. 선고 2020가단329555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적물 기본정보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. 5. 13.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, 주식회사 E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.

D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2 목적물 기본정보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. 5. 13.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주식을 D에게 양도하고, 주식회사 E에 그 주식양도를 통지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권현영, 판사 조윤정, 판사 이재희

별지